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높은위험]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 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 이 투 자 설 명 서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이머징 원자재 증권 자투자신탁 A(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슈로더 이머징 원자재 증권 자투자신탁 A(주식)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 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슈로더 이머징 원자재 증권 자투자신탁 A(주식)
2. 집합투자기구 분류: 투자신탁, 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4. 판 매 회 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 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작 성 기 준 일: 2013년 8월 6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3년 8월 8일
7.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2 조차
8.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합니다.
9.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금융위원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금융위원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
 - 서면문서: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본점, 금융위원회, 판매회사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판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동 간이투자설명서는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투자 목적

이 투자신탁은 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투자신탁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를 투자합니다.

※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자는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해당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투자전략 및 투자제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및 이 투자신탁의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s) 국가들에 상장 또는 등록된 에너지 및 원자재(Commodities) 관련 기업의 주식등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진 **슈로더 이머징 원자재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을 최대 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슈로더 이머징 원자재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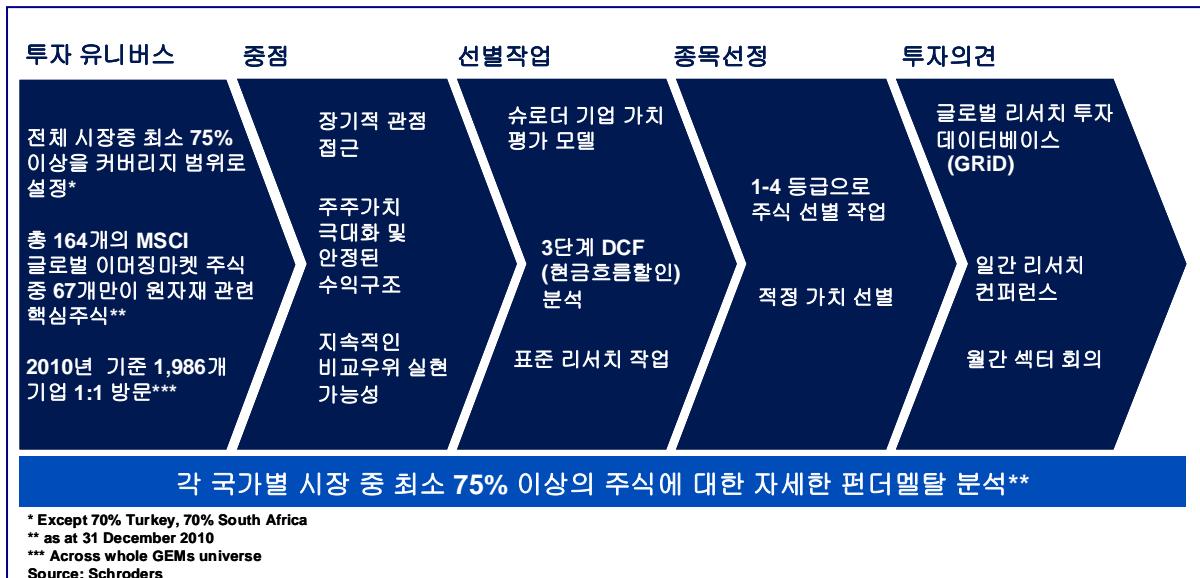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1) 외국주식	60% 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 가. 전세계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s) 국가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에너지 및 원자재(Commodities) 관련 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 상기 투자대상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 중 주로 투자하는 자산에 대하여 표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세부 운용전략 (모투자신탁의 주요 운용전략)

- 적극적으로 전세계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s) 국가들에 상장 또는 등록된 에너지 및 원자재(Commodities) 관련 기업의 주식 등에 중장기적으로 투자
- 이머징마켓 국가에 속하는 개별기업에 대해서 상향식(Bottom-up) 기업분석 방식에 의한 투자대상 종목을 선정
- 다양한 스타일과 섹터에의 투자를 통해 시장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특정 국가, 섹터 및 스타일에 치우치지 않는 운용 방식을 추구
- 독자적인 리서치와 지속적인 사후 밸류에이션 모니터링을 위해 포트폴리오 관리 및 재구성을 위해 노력

<모투자신탁의 운용프로세스>



(3) 위험 관리

- **위험관리방법**

집합투자기구는 운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 (Best Investment Global System "BIGS")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 차원의 트레킹에러, 베타수준, 종목 집중도, 스타일 분포, 시장대비 성과 분석 등 다각적인 평가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환해지**

이 자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슈로더 이머징 원자재 모두자신탁 내 외화자산 평가액의 미달러화 환산금액에 대하여 담당 운용전문인력의 재량으로 $80\% \pm 20\%$ 수준에서 원/달러 선물환 등을 통해 해지하되, 시장상황 변동시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환해지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지수: Customized MSCI Emerging Markets Commodities index (USD)**

※상기 참조지수는 투자가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를 위한 단순 참조지수로서 투자신탁재산내 유동성 및 환해지에 의한 성과 등의 요소는 참조지수내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참조지수 산출시 종가, 환율등의 적용시점 차이에 따라 투자신탁 성과와 괴리를 보일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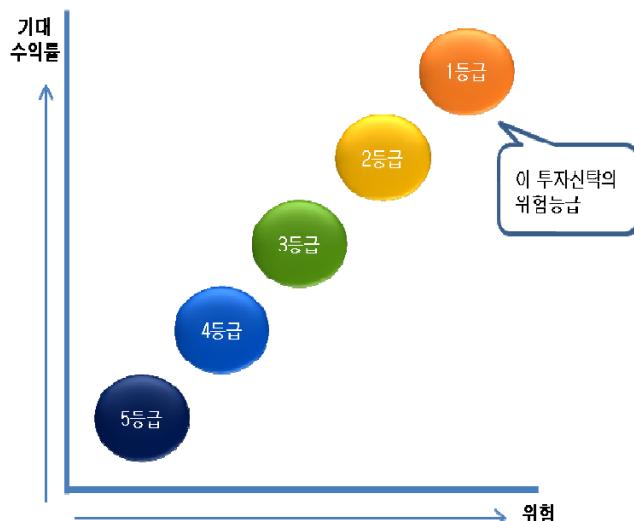
2.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증권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재산은 주로 해외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그러한 기초 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와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채권 등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는 금리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변합니다. 몇몇 투자신탁은 가격하락 및 자본손실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고수익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 등급 증권, 등급이 낮은 증권 및 이에 상당하는 등급이 없는 증권은 등급이 높은 증권 보다 수익 및 가격의 변동 폭이 더 넓을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재산은 외화표시 증권 또는 하위 집합투자증권 등의 표시통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당해 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는 재량으로 당해 투자신탁이 해당통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해 가치가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환위험 해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위험 해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위험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전세계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 국가들에 상장 또는 등록된 에너지 및 원자재(Commodity) 관련 기업의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 신고제도 (FATCA)하의 미국 세금 원천징수	이 투자신탁은 미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미국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따라 미국에서 얻은 소득 및 이 투자신탁에게 이자·배당금을 가져다 주는 자산의 매각 수익 각각의 30%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세청 또는 재무부는 아직 협정 양식(Form)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세청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은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위 규정의 운영은 현저히 확대될 수도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잠재적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규정 및 제공·공개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규정 및 정보 보고·공개에 대하여 아직 명확히 정하여진 바가 없으며, 추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상세 투자위험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은 채권 등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5 등급 중 1 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투자신탁이나,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혼합하여 투자하는 혼합형투자신탁 등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여 해당 투자신탁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 대상 국가의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2013. 6. 30 현재)

(1)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성명	년생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 (수탁고기준)	
김영신	1971	이사 책임	12*	1,71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로먼스미스바니증권 세일즈 트레이딩 - 씨티그룹증권 트레이딩 - 슈로더투신(2005.6 ~) - 운용경력 5년 - 연세대 영문학 석사
김영민	1964	상무 부책임	24**	2조4853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투신 국제펀드 운용 - 한국투자증권 홍콩현지법인 - 슈로더투신(2007.8 ~) - 운용경력 19년 - 부산대 경영학 학사

* 상기 운용인력이 책임운용전문인력으로 있는 집합투자기구 중 당해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수치임

** 상기 운용인력이 책임운용전문인력으로 있는 집합투자기구 기준임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투자 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인력은 책임운용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의 개수 및 규모: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위탁집합투자업자 운용전문인력

펀드매니저	앨런콘웨이(Allan Conway)
운용자산규모	US\$ 26.9 bn('12.12.31현재)
과거 운용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SF Emerging Markets fund (2004.11 ~ 현재) - SISF BRICs fund (2005.10 ~ 현재) - SISF Latin American fund (2004.11 ~ 현재) - SISF Middle East fund (2007.09 ~ 현재) - SISF Emerging Europe fund (2004.11 ~ 현재) - SISF Global Emerging Market Opportunities fund (2007.01 ~ 현재) - Schroder EM Commodities fund (2008.04 ~ 현재)

(주1)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펀드매니저는 예고없이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6. 투자실적추이(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12.07.01 ~13.06.30	11.07.01 ~12.06.30	10.07.01 ~11.06.30	09.07.01 ~10.06.30
펀드	-8.78	-26.15	33.36	16.32
참조지수	-10.16	-28.42	29.41	19.61

주1) 참조지수: Customized MSCI Emerging Markets Commodities index (USD)

주2) 참조지수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II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집합투자기구 종류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A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20%	매입시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환매시
C1, C2, C3, C4, C5, C-e, F, I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 단, 이익금은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개인이 보유한 투자신탁의 평가액에 따른 환매수수료와 실제 부과되는 환매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환매 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인의 계정으로 또는 미국인이 직간접적인 실질 소유인 비미국인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매각될 수 없습니다. 상세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집합투자기구 종류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A	C1	C2	C3	C4	C5	C-e	F	I	
집합투자업자 보수	0.9000	0.9000	0.9000	0.9000	0.9000	0.9000	0.9000	0.9000	0.9000	
*판매회사보수	1.1000	1.1900	1.4000	1.3000	1.2000	1.1000	1.1900	0.0500	0.3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신탁업자보수	0.0600	0.0600	0.0600	0.0600	0.0600	0.0600	0.0600	0.0600	0.0600	
일반사무관리 회사보수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기타비용	0.0036	0.0000	0.0027	0.0031	0.0032	0.0025	0.0033	0.0033	0.0000	사유 발생시
총보수 · 비용	2.0836	2.1700	2.3827	2.2831	2.1832	2.0825	2.1733	1.0333	1.2800	-
합성 총보수 · 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 · 비용 포함)	2.2147	2.1700	2.5126	2.4232	2.3354	2.2026	2.3054	1.1619	1.2800	-
증권 거래비용	0.1438	0.0000	0.1471	0.1355	0.1415	0.1459	0.1456	0.1447	0.0000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접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접 회계연도: 2012.04.08 ~ 2013.04.07]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접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접 회계연도: 2012.04.08 ~ 2013.04.07]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2013년 6월 30일 현재 설정된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만 산출되었으며,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6) 종류C-e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조건: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고객

주 7) 종류F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조건: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9조제5항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5호 내지 제18호는 제외), 100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500억원 이상의 법인 고객, 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변액보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

주 8) 종류I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조건: 50억 이상~100억 미만 개인, 50억이상~500억 미만 법인

주 9) 종류 C-e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보수는 2011년 1월 10일부터 정율식 인하 적용:

- a. 연 1.400%: 2011년 1월 10일~2012년 1월 9일
- b. 연 1.300%: 2012년 1월 10일~2013년 1월 9일
- c. 연 1.190%: 2013년 1월 10일~2014년 1월 9일
- d. 연 1.090%: 2014년 1월 10일 이후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천원)

구분	집합투자기구 종류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A	344	806	1,293	2,632
	C-e	268	791	1,295	2,647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종류 A 와 종류 C-e 의 총 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4 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 작성 시점에 종류 C1 의 잔고가 없어 종류 A 와 종류 C-e 의 보수비용을 비교하였습니다.

2. 과세

(1)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상장주식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증권 신고서 및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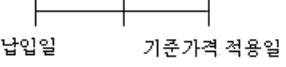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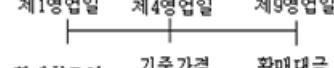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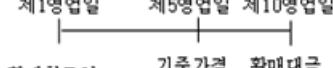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1) 기준가격 산정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 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종류간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투자신탁 간 판매보수 및 수수료·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매일 산정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
공시방법 및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집합투자업자(http://www.schroders.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매입 및 환매 절차 : 판매회사 영업시간에만 가능.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도 가능(단, 판매사별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구 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이후
매 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4영업일 
환 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D+8)에 환매대금을 지급 제1영업일 제4영업일 제9영업일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10영업일(D+9)에 환매대금을 지급 제1영업일 제5영업일 제10영업일 

(주1)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주2) 환매의 경우,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III 요약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5기(2012.04.08 – 2013.04.07)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4기(2011.04.08 – 2012.04.07)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3기(2010.04.08 – 2011.04.07)	삼일회계법인	적정

(단위: 원)

요약 대차대조표			
항 목	제 5기	제 4기	제 3기
	(2013.04.07)	(2012.04.07)	(2011.04.07)
운용자산	12,490,512,677	17,624,811,316	26,603,809,876
증권	12,394,509,021	17,168,748,996	26,092,224,52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96,003,656	456,062,320	511,585,356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79,757,989	288,854,447	1,200,641,804
자산총계	12,670,270,666	17,913,665,763	27,804,451,680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428,513,845	256,065,935	657,171,731
부채총계	428,513,845	256,065,935	657,171,731
원본	17,136,437,455	22,455,639,224	26,747,357,952
수익조정금	210,959,673	742,209,898	523,318,485
이익잉여금	-5,105,640,307	-5,540,249,294	-123,396,488
자본총계	12,241,756,821	17,657,599,828	27,147,279,949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제 5기	제 4기	제 3기
	(2012.04.08 – 2013.04.07)	(2011.04.08 – 2012.04.07)	(2010.04.08 – 2011.04.07)
운용수익	-1,441,998,875	-5,536,687,054	3,632,867,677
이자수익	11,704,178	19,045,671	16,244,492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1,453,703,053	-5,555,732,725	3,616,623,185
기타수익	113,282	0	0
운용비용	1,621,200	2,581,200	3,066,00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1,621,200	2,581,200	3,066,000
기타비용	634,460	981,040	1,498,040
당기순이익	-1,444,141,253	-5,540,249,294	3,628,303,637
매매회전율	0.00	0.00	0.00